

교육균형발전지구법안 (김문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064
----------	-------

발의연월일 : 2025. 9. 17.

발 의 자 : 김문수 · 김 윤 · 정진욱
문진석 · 김동아 · 안도걸
백승아 · 김준혁 · 김우영
김남근 · 박홍배 · 양부남
민형배 · 이수진 · 김현정
이훈기 · 이재관 · 이병진
의원(18인)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저출생과 과도한 수도권 쏠림 등으로 지방 소멸 및 지역교육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임. 시도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균형발전과 미래 발전동력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정부는 특정 지역을 지정하여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지역교육 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교육균형발전지구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이 제도화 및 확산되도록 함으로써 지역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선순환 구조를 모색하며 국가의 고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교육균형발전지구를 지정·운영하여 지역교육의 발전과 정주기반 강화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교육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교육균형발전지구위원회의 검토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간을 정해 한시적으로 지구를 지정할 수 있음(안 제5조).
- 다. 교육균형발전지구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한 보육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고, 학교 및 학교 밖 시설 등을 이용한 거점형 늘봄학교 및 거점형 늘봄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 라. 교육균형발전지구계획을 적용받는 학교의 장은 다문화학생 등을 위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 마. 교육균형발전지구의 관할 교육감은 농어촌학교의 전·입학 등 허용, 학교 통합운영을 위한 학년제 편성의 자율적 운영,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특수학교 병설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 바. 교육부장관은 기초학력보장 및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을 위하여 교육균형발전지구에 교원을 증원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직원을 증원할 수 있으며, 교육감은 통합운영

학교의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교원 간의 교차지도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사. 법무부장관은 교육균형발전지구계획을 적용받는 고등학교 이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하여 사증의 발급절차, 졸업 후 취업을 위한 체류 자격의 변경 및 체류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요건을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교육균형발전지구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균형발전지구를 지정·운영하여 지역교육의 발전과 정주기반 강화를 통하여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균형발전지구”란 지역간 교육 균형발전 및 정주기반 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 “교육균형발전지구계획”이란 교육균형발전지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규정한 사업의 지속성 보장과 국가 균형발전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교육균형발전지구(이하 “지구”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5조(지구의 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 제8조에 따른 교육균형발전지구위원회의 검토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2.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

② 지구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지구의 지정·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교육균형발전지구계획(이하 “지구계획”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구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지구계획을 제출하기 전에 지구계획에 대하여 학교 구성원, 주민, 관계 전문가,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그 내

용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지구의 지정, 지정신청 및 의견청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지구의 지정해제 등) ① 교육부장관은 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교육균형발전지구위원회의 검토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지구 지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지구에 대한 규제특례의 적용이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경우

3. 지구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과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구를 운영할 때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구계획과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해제에 앞서 제8조에 따른 교육균형발전지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구의 지역기여도 및 영향력을 평가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교육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구

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정해제 및 계획 변경의 구체적 요건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교육균형발전 정책의 시범실시) 교육부장관은 지역 간 교육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시범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교육균형발전지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교육부장관은 지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균형발전지구위원회(이하 “지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구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
 2. 지구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계획
 3. 지구의 지정, 지정해제 및 변경
 4. 지구의 지역기여도 및 영향력 평가
 5. 그 밖에 지구의 지정·운영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지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위원과 7명 이상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당연직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되고, 위촉위원은 교육계, 교육 관련 단체, 지역 전문가 및 그 밖에 지구의 발전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

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지구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⑥ 그 밖에 지구위원회와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지구 전담기관 등) ① 교육부장관은 지구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지구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 운영을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아동복지시설 이용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이하 “유치원”이라 한다)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정규과정 외의 시간 동안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이하 “지역아동센터”라 한다)를 이용하여 영유아 보육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지역아동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영유아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 교육 및 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보육 전문가 및 필요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지역아동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보육 프로그램을 제

공하는 경우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1조(거점형 늘봄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지구계획을 적용받는 초등학교의 정규수업 외 교육활동(이하 “늘봄학교”라 한다)을 관할 학교 시설 및 학교 밖 시설 등을 이용하여 거점 형태의 늘봄학교(이하 “거점형 늘봄학교”라 한다)로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거점형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시설로서 학교 밖의 시설(이하 “거점형 늘봄센터”라 한다)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으로 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거점형 늘봄학교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민원처리 책임, 소속 교직원에 대한 지도·감독
2.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9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교 시설·설비·교구의 관리·점검·보수·교체 등 조치 및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교육

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안전사고 예방

3.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제2항에 따른 학생의 안전대책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활동 안전대책 점검·확인 등

4.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5항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확인 등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5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의 확인 등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거점형 늘봄센터 등 학교 밖에서 늘봄학교를 이용하는 학생의 안전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학생의 통학을 위한 차량의 운영
2. 안전사고 및 범죄 등 예방을 위한 시설점검 및 방범시설의 설치
3. 늘봄학교 운영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 및 지원

제12조(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① 지구계획을 적용받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설립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설립기준을 교육감이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지구계획을 적용받는 학교의 교육과정 후속지원 계획, 수업, 학년제, 교과용 도서 및 수업연한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제29조, 제39조, 제42조 및 제46조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교육과정의 특례) ① 지구계획을 적용받는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다문화학생등을 위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지구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통학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농어촌 학교 및 소규모 학교에 관한 특례) ①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13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43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 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학교(이하 “농어촌학교”라 한다)로의 전학·입학 등을 허용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26조, 제30조 및 제61조에도 불구하고 지구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를 통합운영하기 위하여 학년제 편성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특수학교를 병설할 수 있다.

- 제15조(기초학력보장 및 지역 교직원에 관한 특례) ① 교육부장관은 「기초학력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학습지원교육 실시 및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을 위하여 지구 내 학교에 교원의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교육감과 협의하여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4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원을 추가로 둘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2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 내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지원청에 지방공무원을 추가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제2항에 따른 지구계획을 작성할 때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은 「교육공무원법」 제3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45조에도 불구하고 지구계획을 적용받는 학교와 유치원 및 어린이집 중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의 교원(「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과 직원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④ 교육감은 지구계획을 적용받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통합운영학교의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교원 간의 교차지도(다른 학교급의 학생을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를 허용할 수 있다.
- 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4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통합 운영과 교차지도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교차지도에 참여하는 교원에게 필요한 연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관한 특례) ①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지구계획을 적용받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서 사증의 발급절차, 졸업 후 취업을 위한 체류자격의 변경 및 체류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요건을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지구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7조 및 제9조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지구 내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 또는 제12조에 따른 무상교육 또는 의무교육 기관의 외국인 유학생에게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7조(국유·공유재산 대부 등에 관한 특례) ① 지구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지구계획에 활용되는 토지는 지구계획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처분할 수 없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구계획을 적용받는 학교의 신·증설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공유재산 및 폐교재산을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계약을 체결할 때 그 재산을 정하여진 기간 내에 지구계획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특

약을 둘 수 있다.

제18조(국회에 대한 보고) 교육부장관은 지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사회적 배려대상자 교육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여 그들이 자신의 잠재력과 역량을 발휘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지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